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 “수해민 일상 복귀 최대 신속보상 추진해야”

전북도-전남도, 댐 하류 피해보상 관련 환경부장관 면담  
홍수 피해액 국가적 보상·댐과 하천 통합관리 등  
양 지자체장, 수해 피해 대책 담은 공동건의서 전달

전북도와 전남도가 지난해 8월 집중 호우에 따른 댐 하류 피해 보상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양 지방정부는 수해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최대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함께 냈다.

전북도는 2일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한정에 환경부장관을 만나 지난해 8월 호우에 따른 댐 하류 수해 원인조사용역에 대한 공동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 등 섬진강변과 웅담댐 하류 지역 9개 시·군 일대에서 2,169억원 규모의 수해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를 통해 댐 하류 피해 원인 조사용역을 마무리하며, 수해 원인이 댐 관리 운영 부실뿐만 아니라 하천관리 부실 등 지자체에도 직·간접적인 원인이 있다는 내용이 주민설명회에서 발표되자 해당 지자체는 물론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용역 결과대로라면 환경부 국

토부 행안부 지자체, 수지원공사, 농어촌공사 등으로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기관별 책임 소재를 나누기 어려우며, 기관별 책임을 나눌 경우 책임회피 및 소송 우려와 보상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수재민에게 돌아가 고통이 가중될 것임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주관 부처인 한정에 환경부장관을 만나 신속히 수재민의 눈물을 닦아 줄 방안을 담은 공동 입장을 전달했다.

양 지사는 환경부 장관에게 ▲수재민들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홍수 피해액 국가적 보상, ▲수해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최대 신속 보상 추진, ▲수해예방방지를 위해 댐과 하천의 통합관리, ‘국가차원 지방하천 시설’ 등 특단의 대책 마련과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도 지난달 28일 제 383회 임시회 폐회에서 도의회 최영일 부의장(순창)이 발의한 ‘행방된 수해 원인 조사용역 보완 촉구 및 주민 약속 저버린 댐관리당국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유호상 기자



송하진 도지사는 2일 한정에 환경부장관을 만나 지난해 8월 호우에 따른 댐 하류 수해 원인조사용역에 대한 공동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을 국토부 지역개발  
공모에 고창군 선정

생활중심마을 조성 연계  
‘로컬택트 라이프 고수면’  
전북도, 국비 50억원 확보

전북도가 국토교통부의 2021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고창군이 선정돼 국비 50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 낙후지역의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창군을 비롯해 12개 지자체의 2021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선정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로컬택트 라이프 고수면’ 사업은 고창군 고수면 일원에 국민입대주택과 생활중심마을 조성 등 주거공공과 연계해 고수 드립센터 등 생활 SOC시설 확충과 일자리 카페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주거플랫폼 조성사업이다.

김영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내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9월부터 수요조사와 컨설팅을 통해 공모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자치경찰위원장 도의회 업무보고, 상위법과 충돌 없다

이영구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의 전북도의회 업무보고 거부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 가운데, 변호사 출신 두세훈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 2)은 “자치경찰사무는 전북도 소관 사무임을 강조하며,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상 도의회 출석·답변의무가 있는 관계공무원으로서 명백히 도의회 출석·답변의무가 있다”는 법령 해석을 내놓았다.

두세훈 도의원에 따르면 첫째, ‘자치경찰사무가 자치사무가 아니어서 전북도 소관사무가 아니다’라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지방자치법(약칭 자치법) 제9조에 따라 전북도 소관사무에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약칭 단체위임사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치경찰사무는 경찰법 제2조에 따라, 국가경찰사무와 구별해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사무의 성질상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면서 “구경찰법과는 달리 경찰법 제2조는 전북도에 국민의 생명을 보

두세훈 도의원 “자치법상 출석·답변의무 있어” 법령해석  
“자치경찰제 취지 살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 주장



호하고,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부여해 전북도가 자치경찰사무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경찰법 제4조 제2항에서는 전북도에 조례제정 권까지 부여했다”고 밝혔다.

결국 자치경찰사무는 경찰법이 명백히 전북도에 위임한 단체위임사무로, 전북도 소관사무에 해당해 자치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둘째, ‘전북 자치경찰위원장이 자치법이 적용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두 의원은 “경찰법 제20조에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어, 위원장에게 자치법이 적용되

는 것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셋째로, “자치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도의회 출석·답변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두 의원은 “국가사무에 관해 직무상 독립적인 합의제 감사기관의 장인 감사원장도 국회법을 적용받아 국회에 출석한다”면서 “경찰법 제18조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가 도지사 소속이지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더라도 본질은 자치경찰사무를 단체위임사무로 하는 전북도 소관사무 수행이기 때문에 그 위원장에게 자치법이 적용된다”며 법률 전문가다운 정확한 해석을 내놓았다.

그는 특히, “자치법 제42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

석·답변의무가 있고, 자치법 제42조 제3항에서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의회기본조례 제43조에 따르면, ‘도지사소속 합의제행정기관인 전북자치경찰위원회의 소속공무원인 그 위원장(2급)은 전북도 소속 4급이상 지방공무원으로, 자치법상 도의회 출석·답변의무가 있는 관계공무원에 해당해 도의회 출석·답변의무가 있다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는 게 두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두세훈 도의원은 “이영구 위원장의 도의회 출석·답변 거부는 자치법상 부과된 의무위반이며, 도의회를 경시한 위원장은 사과하고, 업무보고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위원장의 도의회 출석·답변 의무는 180만 도민을대표하는 도의회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고, 공통경찰 탄생을 막기 위해 도입한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

## 라오스에 우리 정부 혁신사례 전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6일까지 공공행정개혁 역량강화 연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김장희)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라오스 중앙정부 중견관리자급 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라오스 정부 공공행정개혁 역량강화’ 연수를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라오스 정부에서 적극 추진 중인 행정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KOICA 글로벌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연수에는 라오스 중앙정부 각 부처 조직·인사 담당 중견간부들과 내무부 산하 행정연수원(PARTII) 소속 공무원들이 참가한다.

라오스는 최근 국가발전 위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행정개

혁과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역량강화를 적극 추진 중이며, 라오스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는 조직개편, 인사관리, 규제개혁, 변화관리 등을 주제로 정부혁신 및 공무원 역량강화 관련 한국의 경험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맞춤형 연수과정을 마련했다.

특히 연수생 스스로 한국의 전문가와 함께 라오스 행정현실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이행전략을 수립하는 시간을 편성해 연수 종료 이후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라오스 행정개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김윤상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때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때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